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원중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현행 조례에는 자전거 이용 안전과 직결되는 규정에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,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조항이 있습니다.
- 이에 포괄적 표현을 보완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,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
- 또한 자전거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의 “음주상태”에 관한 조항은 “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”로 수정하여 약물의 위

힘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.

- 그리고 자전거와 자동차 간 안전 확보 의무를 도로교통법 규정에 맞추어 “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”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자전거 안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.
-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사문화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감면 기준을 삭제하였으며, 관행적 행정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여 시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,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